

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3255호
2. 발 의 자 : 문영민 의원
3. 발의일자 : 2022. 5. 25.
4. 회부일자 : 2022. 5. 27.

II. 제안이유

- 「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‘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’의 범위(대상)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는 법령과 달리 ‘저소득층 등’으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를 적용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조례에 명시된 ‘저소득층’에만 한정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, 그 외의 취약계층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.
- 이에 조례에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정의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신설하여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원격교육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.

III. 주요내용

- 「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“취약계층 학생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함(안 제2조제4호).
- 현행 조항에서 규정하는 ‘장애학생’을 삭제하고 이를 ‘취약계층 학생’에 포함(안 제10조).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」과 같은법 시행령, 「초·중등교육법」
 2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참조).
 3. 기 타
- 입법예고(2022.6.2. ~ 6.10.) 결과 : 의견 없음.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2년 5월 25일 문영민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255호로 발의되어 2022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원격수업 지원에 있어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‘원격수업 취약계층 학생’의 정의를 신설하고,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- 정부는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한 「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」 제정의 후속 조치로 올해 3월 「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‘시행령’)을 제정·시행하였습니다.¹⁾
- 동 시행령에는 원격교육 전문기관 지정 절차 및 원격교육으로 발생하는 데이터의 처리 근거 등이 규정됨과 동시에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구체적인 범위가 정의되었습니다.
- 시행령 제2조는 「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」 제4조 제2항²⁾에 근거하여 지원해야 하는 학생의 범위를 특수교육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,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 등 7가지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.

1) 「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」(시행 2022.3.25., 대통령령 제32555호, 2022.3.25., 제정)

2) 「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장애학생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[표]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³⁾

연번	지원 대상	세부 사항
1	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인 학생	
2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인 학생	
3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	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자녀 등
4	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	읍·면 지역 등에 소재한 학교 학생
5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	
6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학생	
7	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학생으로서 원격교육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학생	

○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와 같이 제시된 상위법령상 취약계층 정의를 조례에 적용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지원대책의 우선순위를 명료하게 설정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라는 차원에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.

나. 안 제2조제4호 신설 및 제10조에 대한 검토

○ 한편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는 원격수업 취약계층 학생을 “「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학생”으로 정의하고, 안 제10조는 “교육감이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적극 배려해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3) 「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(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)을 정리한 것임.

- 이는 현행 조례가 ‘장애학생 및 저소득층 등’으로 정의하고 있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,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조문의 취지와 합치된다고 할 것입니다.
-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 3월 발표한 「2020학년도 초·중등 원격수업 운영 지침」에서 규정된 공정성·형평성 확보를 위한 취약계층 관련 사항과⁴⁾ ‘인공지능(AI) 튜터 마중물학교’ 시행에 있어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범위⁵⁾ 등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8667, 2022.6.3.).

□ **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

4)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 원격수업 운영 지침(2020.3.31. 제정, 2020.4.6. 시행,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), 5쪽.

※ 「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2020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 원격수업 운영 지침」(2020.3.31. 제정, 2020.4.6. 시행,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)도 동일함.

6 유의사항

- (공정성·형평성) 학교는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공정한 학습 관리, 다문화 학생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

5) 동 사업은 크게 ① 다문화·탈북학생 학습·정서·심리 분석 및 상담 지원, ② 난독·난산·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, ③ 장애학생 대상 학습 지원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.
(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(2022), 「2022 인공지능(AI)·과학·메이커·영재·정보·수학교육 주요업무계획」, 22쪽.)

관계 법령

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

[시행 2022. 3. 25.] [법률 제18459호, 2021. 9. 24., 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원격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며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장애학생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

[시행 2022. 3. 25.] [대통령령 제32555호, 2022. 3. 25., 제정]

제2조(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) 「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에서 “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장애학생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”이란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말한다.
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인 학생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인 학생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
-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학생
-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학생으로서 원격교육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학생